

충청북도 농민교육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2. 4. 28

나. 회부일자 : 1992. 4. 29

3. 제안이유

가. 각종 사회교육 여건에 부응하기 위하여 농민교육에서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한 사회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민교육의 기능이 변천되었으며

나.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농업의 "농"자를 기피하고 있어 각급 농대 및 농고의 명칭을 개명하는 실정임.

다. '91년 도의회의 충청북도 행정사무 감사시 농민교육원 교육은 범국민적 차원에서 광동의식 함양을 위한 정신교육으로 전환을 요구한 바도 있으며

라. 농업인구의 감소와 사회적 주민인식의 변화등으로 전 도민의 사회교육기관으로 변화됨에 따라 현실에 맞추어 "농민교육원"을 "도민교육원"으로 하고 불합리한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4. 주요골자

○ 조례명

"농민교육원"을 "도민교육원"으로 변경

○ 제1조 (설치)

"영농후계자 양성과 과학적 영농기술 보급을 위하여 충청북도 농민교육원을 둔다"
문

"도민의 정신교육 과학적 영농기술교육과 기능인력 양성을 위하여 충청북도 도민교육원을 둔다"로 변경

○ 제3조 (업무)

- 새마을 교육 → 도민일반 교육
- 농기계 훈련 → 농기계 교육
- 교육용 각종 실습장 운영 → 기능 교육훈련
- 기타 농촌근대화 시책상 필요한 교육 → 기타 시책상 필요한 교육으로 변경

○ 제4조 (원장)

- 제2항중

"다만 제3조 제3호 내지 제5조 규정의 업무에 대하여는 농촌진흥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를 삭제

5. 검토의견

충청북도 농민교육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 농민교육위주에서 도민전체를 대상으로한 사회교육으로 점차 전환됨에 따라 농민교육의 기능이 변천되어가고 있을뿐 아니라
- '91년도 행정사무 감사시 농민교육원 교육은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공동의식 함양을 위한 정신교육을 요구한 바도 있어
- 농민교육원 조례중 일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6. 별첨

- 충청북도 농민교육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1부.
- 신규조문 대비표 1부.
- 참고자료(생략)
 - 법령 부분발취 1부.
 - 충청북도 농민교육원 조례 1부.
 - 내무부 공문서 사본 1부.

충청북도농민교육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농민교육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충청북도농민교육원조례"를 "충청북도도민교육원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설치) 도민의 정신교육, 과학영농기술교육과 기능인력양성을 위하여 충청북도도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업무)중 각호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민정신교육
2. 영농기술교육
3. 농기계교육
4. 기능훈련교육
5. 기타 시책상 필요한 교육

제4조(원장) 제2항중 지휘감독한다. 다음에 "다만 제3조, 제3호내지 제5호 규정의 업무에 대하여는 농촌진흥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문대조표

현행	개정
<p>제명: 충청북도 농민교육원 조례</p> <p>제1조 (설치) 농촌근대화의 역군이 될 수 있는 영농후계자 양성과 과학적 영농기술 보급을 위하여 충청북도농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p> <p>제3조 (업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새마을교육 2. 영농기술교육 3. 농기계훈련 4. 교육용 각종실습장 운영 5. 기타 농촌근대화시책상 필요한 업무 <p>제4조 (원장) ①</p> <p>②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제3조 제3호내지 제5호 규정의 업무에 대하여는 농촌진흥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p>	<p>제명: 충청북도 도민교육원 조례</p> <p>제1조 (설치) 도민의 정신교육, 과학영농기술 교육과 기능인력양성을 위하여 충청북도 도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p> <p>제3조 (업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민정신교육 2. 영농기술교육 3. 농기계교육 4. 기능훈련교육 5. 기타 시책상 필요한 교육 <p>제4조 (원장) ①</p> <p>②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이하삭제</p>